

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9월 22일 정진술 의원외 35명
2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진술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 ‘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’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톱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.
-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톱킹 범죄를 ‘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’ 또는 ‘상대적으로 죄질이

낮은 범죄'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, 낮은 처벌,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음.

- 스토킹 범죄는 반복·지속되는 경우가 많고,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시급함.
- 이에 반의사불범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,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함.

2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3. 이송처

가. 국회 : 보건복지위원회

나. 정부 : 여성가족부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건의안의 개요

- 본 건의안은 2021. 3. 24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스토킹처벌법”이라 함)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. 10. 21. 시행되었지만 지난 2022. 9. 14. 서울,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스톱킹범에게 살해당하는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스톱킹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,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 등 스톱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「스토킹처벌법」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현행법상 스톱킹 행위·범죄에 대한 보호제도

- 현행 「스토킹처벌법」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응급조치, 긴급 응급조치,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.

- ①(응급조치¹⁾)스톱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

1)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스톱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)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스톱킹행위의 제지,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
2.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
3.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
4.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(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)

나가 경고,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, ②(긴급응급조치²)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·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, ③(잠정조치³)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

만 해당한다)

2) 「**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2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(이하 “긴급응급조치”라 한다)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,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,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3) 「**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(긴급응급조치)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
2.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3. 피해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4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
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: 변호인

2.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: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

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 경고, 접근금지,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음.

- 다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⁴⁾에 그치고 있으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최대 6개월⁵⁾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.
- 또한 스토킹의 기간·대상·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스토킹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임.

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4)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(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~③ (삭제)

5)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2.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3. 피해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4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
②~④ (생략)

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□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

- 현행 「스토킹처벌법」 제18조⁶⁾제3항에서는 제2항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한 특수스토킹범죄 외에 제1항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,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스토킹범죄 전단계인 스토킹행위에서 경고 등 사법경찰관리를 통한 응급조치를 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음⁷⁾.
-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처벌의사표시에 따른 보복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는 과정에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.

6)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7) 심영주, 이상한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언, 법조협회 2022.4.28., .p.80

3 종합 의견

- 2022. 10. 19.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,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, 온라인스토킹처벌 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「스토킹처벌법」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음.

<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8)>

구분	주요 내용
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▶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▶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
피해자 보호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▶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 ▶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▶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
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 ▶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
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취소·변경·연장 신청 근거 규정 신설 ▶ 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가 취소·변경·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

-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시작되지만 지속·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강도가 강해지며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폭행, 협박에

8) 법무부, 보도자료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등 입법예고, 2022.10.19.

이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
특성을 지니는 바,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(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9월 22일

발 의 자: 정진술, 강동길, 김 경,
김기덕, 김성준, 김인제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유진, 박철성, 봉양순,
서준오, 성흠제, 송도호,
송재혁, 아이수루, 왕정순,
, 유형찬, 유정희, 이민옥,
이병도, 이상훈, 이소라,
이승미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임규호, 임만균,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
최기찬, 최재란, 한 신
의원(36명)

1. 주문

-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 및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을 요구함.

2. 제안이유

- 현행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 ‘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’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.
-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‘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’ 또는 ‘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’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, 낮은 처벌,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음.

- 스토킹 범죄는 반복·지속되는 경우가 많고,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시급함.
- 이에 반의사불범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,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

다. 기타 : 없음

4. 이송처

- 가. 국회: 보건복지위원회
- 나. 정부: 여성가족부

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- 스토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적인 행위로, 지속적·반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,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폭행, 협박,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 및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- 현행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 제18조제3항에 ‘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’고 명시,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‘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’ 또는 ‘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’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, 낮은 수위의 처벌,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.

-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, 112신고,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만 7772건에 달하지만, 이중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.7%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
-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4016건 중 구속 송치된 건 238건으로, 대부분이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.
- 스토킹 범죄는 반복·지속되는 경우가 많고,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시급합니다.
- 스토킹의 기간·대상·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, 현재 1개월을 넘길 수 없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 기간과 최대 4개월을 넘길 수 없는 접근금지 기간 확대,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강화,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강화,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그 외 별도의 신변안전 조치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이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, 스토킹 범죄에 대한

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.

2022. 9. 22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